

아빠의 **당당한** 선택! 남성육아휴직 지원 안내



1 육아휴직지원제도

- **지급대상**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
- **지급기간** : 최대 1년(한 자녀에 대하여 남·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가능), 분할사용(1회)
- **산정기준** : 통상임금의 40%(상한액 100만원, 하한액 50만원)
- **급여지급** :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40%의 75% 지급, 잔여 25%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
※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취업(이직) 시 지원제외

2 남성육아휴직 지원

-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촉진을 위한 **“아빠의 달”** 제도운영

아빠의 달 (인센티브)

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동일 자녀에 대해 **아빠**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**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%(최대 150만원 한도)** 지원 (엄마,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음)

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- **제도개요** :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 15~30시간 근무하는 제도
- **급여지급** :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%를 지원(최대 1년)

4 신청방법

- **신청기간** :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시작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- **신청서류** : 육아휴직급여 신청서(근로자), 육아휴직 확인서·통상임금 증빙자료(사업주)
※신청서식 : 보령고용센터 ▶ 서식자료실 ▶ 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
- **신청경로** : 온라인(고용보험 www.ei.go.kr), 팩스, 우편 또는 인편

5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지원

- **(출산육아기 고용지원)**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·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시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(대규모 월 5~10만원) 지원
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: 1인당 월 30만원(대규모 월 20만원)지원
- **(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)**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후 육아휴직자 복직 후 30일 이상 재직 시(육아휴직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, 대체인력 30일 이상 계속고용)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(대규모 월 30만원) 지원
※대체인력 고용 전 3월~고용 후 6월 내 근로자 고용조정 시 지원제외

6 모성보호 「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」 운영

- **서비스 개요** :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을 신청하여 적시에 맞춤형 인재를 추천해주는 채용지원서비스
- **서비스 신청** : 보령고용센터(☎ 930-6221), 서산고용센터(☎ 661-5603) 또는 워크넷(work.go.kr) 신청